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2 / 7

No.	개정번호	개 정 일	개 정 내 용	비고
1	1.0	2016.12.01	신규 제정	
2	2.0	2014.10.01	일부 개정, 서식 통일, 주소 변경	
3	2.1	2016.03.15	투자사항은 상장사 공시규정 준용	
4	3.0	2022.03.01	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사항 반영 등	
5	4.0	2024.03.01	대규모 기업집단 및 ESG 평가 반영 등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
Proposed by	Reviewed by	Checked by	Approved by	
러진우	이호석	오동근	30	
 담당	경영관리팀장	CFO	대표이사	
허진우	이항석	호동근	하정욱	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3 / 7

#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## 제 2 장 구 성

#### 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 6 조 (소집)

이사회는 "정기이사회"와 "임시이사회"로 운영하며,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4 / 7

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장 제5조 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감사는 정관 및 감사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감사의 직무에 따라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9 조(질서유지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,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,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(1) 주주총회 소집
   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(4) 정관의 변경
    - (5) 자본의 감소
   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5 / 7
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8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9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(10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1) 주식배당 결정
- (12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3) 이사 및 감사의 보수
- (14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2. 경영에 관한 사항
  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(2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(3) 공동대표의 결정
  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, 운영 및 폐지
 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 - (7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 - (8) 지사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 - (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 - (1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 - (11) 내부회계관리 및 감사 운영 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한 규정 제·개정
  - (12) 준법지원인 임명 및 준법 통제기준 제정 및 개폐
-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- (1) 투자에 관한 사항 등(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기준)
  - (1-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인 신규 시설 및 시설외 투자
  - (1-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
  - (1-3)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유형자산취득 및 처분
  - (1-4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자금차입 (장기차입금은 제외)
  - (1-5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
  - (1-6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  - (1-7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 - (2) 결손의 처분
  - (3) 신주의 발행
  - (4) 사채의 발행
  - (5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- (6) 전환사채의 발행
  - (7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6 / 7

- (8)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 사항
- 4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- 5. 기타
  - (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
  - (2) 중요한 소송의 제기
  - (3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- 3.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
  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제3호 1목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인 장·단기차입 내지 지급보증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2 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



규정번호: 2-01 개정번호: 4.0 페이지: 7 / 7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집무집행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 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각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, ①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 15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약 및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위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 담당자가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부 칙

#### 제1조 (시행일)

- 1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개정하되, 이사회 결의 후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16년 03월 15일부터 개정하되, 이사회 결의 후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개정하되, 이사회 결의 후 시행한다.
- 5.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개정하되, 이사회 결의 후 시행한다.

